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 소방청장(119구급과장)
(경유)

제목 2018년도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

나.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
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73호(2017.4.24.) 제10조 “평가결과의 적용 등”

3. 위와 관련, 2018년도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 및 활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, 동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우리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/병원?약국/병원평가정보/분야별 또는 신체부위별/급성기뇌졸중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2018년도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 평가결과 1부
2. 급성기뇌졸중 평가활용 방법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

담당	조신혜	차장	조정아	부장	박미숙	실장	전결 2018.6.18. 박인기
협조자							
시행	급성질환평가부-112	(2018. 6. 18.)	접수	119구급과-3615	(2018.06.19.)		
우	26465	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	/ www.hira.or.kr				
전화번호	033-739-1880	팩스번호	033-811-7422	/ ssin7217@hira.or.kr	/ 비공개		